

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」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6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10월 17일

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산업국장 유 경 숙

나. 제안이유

-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창업, 성장, 재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
- 지역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

다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·운영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, 제35조
-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제11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2) 필요성

-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은 창업지원, 경영·법률·금융·세무·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,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 매칭,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, 경영전략컨설팅,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,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유관 기관 연계 사업 등 소상공인 업무의 전문성과 경제분야 전문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무임.
-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관, 비영리법인,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『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함

○ 위탁 운영개요

- 1) 시 설 명 :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(가칭)
- 2) 위 치 : 구미시 송정대로 120 (송정동) 구미상공회의소 4F

3) 시설규모 : (사무실) 113m²

4) 운영비 : 4억원

5) 조직운영 : 4명 (센터장, 실무자, 컨설턴트 등)

6) 공간구성 : 사무공간, 상담 및 컨설팅 공간

7) 주요사업내용

-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보 제공
- (재)창업, 성장, 재기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기획·운영
-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
- 소상공인 업체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

○ 위탁기간 : 2024년 1월 ~ 2026년 12월 (3년)

○ 수탁자 선정방식

- 신청자격 :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, 비영리법인, 단체
- 공개모집
-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
○ 위탁방법 :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

○ 위탁 소요예산 (년)

[단위 : 백만원]

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
400	197	48	155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, 제35조
-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제11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동의안은

-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각종 맞춤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을 담당할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제동향에 민감하고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은 인정됨.
- 다만,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
-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관련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운영 건은 심도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